

# 당신은 언제 출국합니까?



1/2~5/31 사이에 출국

전년도에 수입이 있습니까?

네

전년도 수입이 100만엔이 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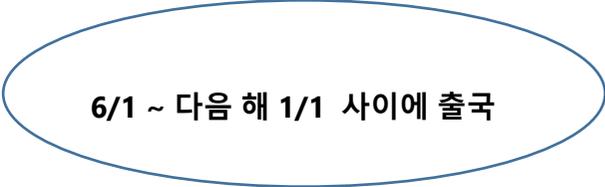
네 또는  
모름니다

6월부터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수속을 하고 과세예정금액을 통장에 넣은 다음 출국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설정해 주십시오.  
※전년도 수입금액은 시민세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오

아니오

미납이 없는지 출국하기 전에 납세과에 확인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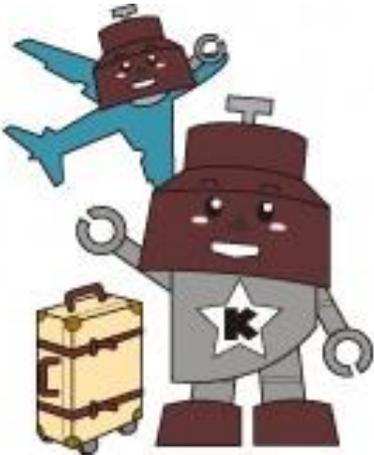
6/1 ~ 다음 해 1/1 사이에 출국

지금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가 있습니까?

아니오 또는  
모름니다

네

전액을 납부하고서 출국해 주십시오.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이체 수속을 하고, 과세액을 통장에 넣은 다음 출국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설정해 주십시오.



큐포랑

※일본어를 잘 못 하시는 분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과 같이 시청에 오십시오.

가와구치시청 (대표) 048-258-1110

과세예정금액의 확인, 납세관리인에 대해서  
납부확인, 자동이체 수속에 대해서

→ 시민세과 048-259-7634~6  
→ 납세과 048-259-7949

이런 때는

## 주민세의 납부에 대한 Q&A

**Q** • 미납이 있는 상태로 출국하면 어떻게 돼나요?

- 과세 될 예정이 있는데, 납부 수속을 하지 않고 출국하면 어떻게 돼나요?

**A** 주민세 납부 수속을 하지 않고 출국하면, 납세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 후, 납세통지서 송달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Q** 공시송달이란 뭐예요?

**A** 공시송달이란, 조사의 결과, 납세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시의 게시장에 일정기간 게시하는 것에 의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서류의 송달이 있었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Q** 납세관리인이란 뭐예요?

**A** 납세관리인이란 당신을 대신해서 납세에 관한 모든 수속 (서류의 수령·납세 등) 을 하는 분입니다.

**Q** 주민세의 통지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A** 매년 6월상순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는 5월 중순에

**Q** 언제까지 납세관리인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A** 출국하기 2주전에는  
제출해주시오.

※수속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출국하는 것이

**Q** 납세관리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A** 자동이체 수속을  
해주십시오.과세금액의  
세액을 통장에 넣은 다음에

**Q** 연내에 일본에 돌아옵니다. 납세관리인이나 자동이체가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6월이후에 납입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Q** 주민세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편지도 납부서도 잃어버렸습니다.

**A** 시민세과에  
연락해주세요. 세액을 알려  
드립니다. 납부서를  
재발행해드립니다.

**Q** 주민세를 얼마나 냈는지 모릅니다.  
아직 내지 않은 주민세가 있습니까?

**A** 납세과에 연락해주세요.  
미납액을 알려드립니다.

**Q** 일본에 없는데 어째서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A** 주민세는 부과기일 (1월1일) 현재, 가와구치시에 주민표가  
있고, 전년도 중에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  
그래서, 연도 도중에 해외로 전출하더라도 과세가 바뀌지 않습니다.